

# 2025학년도 경기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영재고)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1.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게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 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24년 2월 29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3.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 가.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학과별 전형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가능)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단, 영재고는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4. 기타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 ■ 2024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